

第114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8月31日(金) 11時30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所關部署 主要業務推進事項 報告聽取
 - 가. 都市管理局
 - 나. 建設交通局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2. 所關部署 主要業務推進事項 報告聽取 12面
 - 가. 都市管理局
 - 나. 建設交通局

(11時30分 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중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지나고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처서가 지나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가 무더위에 시달리면서도 풍수해를 슬기롭게 견뎌 보람이 있어 대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더욱 풍성함이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풍성한 계절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을 소외받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살피는 온정이 가득한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선출을 마무리하여 제3대 의회 제4기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지켜보면서 전 委員長님이신 金福同委員長님과 위원님들께 의회 위상정립에 힘써주신 데 대하

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배·동료위원님들과 대망에 찬 후반기 제4기 의회를 열어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봉사자가 되어 주민을 위하는 의회상 구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고 처음 갖는 회의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金景良 議事擔當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主任 金景良 議事擔當 金景良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4회 서울특별시 중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8월 21일 鐘路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중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8월 24일 議長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景良 議事擔當主任!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董連浩 財務局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보고에 앞서 재무건설위원회 원구성에 따라서 재무건설위원회가 오늘 처음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秀完 財務課長입니다.

趙朝翼 稅務1課長입니다.

徐明一 稅務2課長입니다.

徐燦奎 地籍課長입니다.

(간부인사)

委員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오늘 상정한 조례와 관련된 간부만 남고 나머지 과장을 퇴장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安載弘 그러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財務課長만 남고 돌아가세요.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安載弘 委員長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중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자면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2001년 7월 1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공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수익허가가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여 위탁계약에 따른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종전 규정에는 행정재산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만을 정의하고 있어 행정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건설이 완료되고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이 되는 관계로 공공복합 수익시설물의 경우, 건설 중에는 임대·사용 등이 불가하였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다양한 임대권을 확보하여 조기에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유지 내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으나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 산출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의 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를 납부함에 있어 일정금액을 일종의 보증금의 형태로 사전에 예치케 하고 예치된 금액의 발생이자수입이 구 금고에서 적용하는 1년 정기예금의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충당되도록 하는 잡종재산의 매각 등에 대한 특례인 전세금 납부제를 신설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비교적 큰 복합공공시설물과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시 청문을 도입하여 변상금 부과·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安載弘 委員長님과 財務建設委員會 委員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중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

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공유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련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1년 새로운 원구성에 따른 安載弘 委員長님을 중심으로 발족한 財務建設委員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후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委員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 (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조례 모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자로 일부 개정되어서 이에 따른 개정과 일부 규정을 현실성있게 보완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다음 개정내용의 개요입니다. 우리 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 본문 61개조 중에서 17개 조문의 개정과 신설이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17개 개정사항 중에서 자구수정조항이 11개조, 내용변경조항이 3개조, 내용신설조항이 3개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내용신설 3개조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신설 3개조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공공시설관리를 수탁받은 자가 다시 전대할 수 있게 하고 전대로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팔각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위탁받은 공단에서 다시 제3자한테 하도급

하듯이 다시 전대를 합니다. 그것이 전에는 불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대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불법을 매개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쟁송의 경우, 소송까지 끌고 갈 경우에는 상당히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4조의2 공유재산의 전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유재산은 지금까지는 전부 사용료만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사용료를 대신해서 전세금 이자가 사용료를 상위할 경우에는 전세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은행에 예탁해서 그 이자로 사용료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다음 제27조의2 변상금 부과시에 사전통지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주민편의 우선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내용변경사항 3개는 제5조에서 은닉재산 담당공무원은 그 재산을 발견, 신고했을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는 규정인데 삭제 이유는 상위 시행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 이종으로 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6조 공유재산심의 대상을 조정했습니다. 두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용도폐지심의대상을 지금까지는 33㎡ 이상의 공유재산, 도로나 하천부지가 33㎡, 10평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30㎡ 즉, 100평 이상의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50%이상의 공사가 진척되고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산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 24조는 공유지내의 사유건물 대부료 산출 시에는 지금까지는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구별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거용은 실점유면적만 부과하도록 해서 주거용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구수정 11개 조항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바꾼다든가 법이 개정돼서 법조

문을 바꾼다든가. 그 다음 22조는 기존요율을 50/000 이렇게 하던 것을 50/1000 이상 이렇게 해서 조금 여유를 두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신설 3개항만 중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시면 총 11개 법률 18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이 무슨 법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 네가지만 살펴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그걸 보시고 그 다음 위탁재산의 전대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위탁관리자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해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다음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제의 근거법규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 법에 적합하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분류인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이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공공시설이란 자구가 많이 나오지만 공공시설의 정확한 개념은 지방자치법에서만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 내용은 공적목적의 수행에 따라서 제공되는 계획적 설비의 일체를 말하며 행정주체 이외에 일반의 사용이 가능한 시설 총체를 공공시설로 개념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문별 내용과 검토의견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대충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요지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전대권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전대를 합법화시켰기 때문에 전대자와 위탁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합법화돼서 소송으로 가더라도 유효합니

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위탁 받은 사람이 전대자한테 사용료나 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은 사실상 법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 시조례에서 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소간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상위준칙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해를 하고 제5조는 그건 아까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공무원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인데 10월 20일자 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6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한 사항인데 용도폐지 심의대상이 종전 33㎡에서 330㎡로, 그 다음 공정 50% 이상의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조~14조는 자구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조의2도 관계법조문만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구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2조는 지금까지 일반공유재산대부율을 50/1000으로 정하던 것을 50/1000 이상으로 이렇게 자구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법에서 10/1000 이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한다 하더라도 모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22조의2도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률의 자구수정(안)이 되었고 24조는 주거용에 대해서 실질유면적만 산출하는 그런 시혜적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조의2 이계전세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재산은 경영수익 구조물,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규모 복합공공시설물 등은 전세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상을 검토할 때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무더기 전세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재산, 그런 재산은 전세처리를 하되 전세금은 1년 이상의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그 이자수입이 사용료에 상당하게끔 역산을 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조는 대부분

등의 납기규정으로 1항에서 선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납기규정을 정하고 있어서 항간에 서로 충돌이 있기 때문에 1항 선납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이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27조는 주택재개발지역 내의 공유토지의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해서 종전에는 년 10%의 이율을 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더 완화를 해서 전액도 사유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27조의2는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제도로서 사전통지 방법과 이의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는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11항4호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개정하면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심사대상을 종전 33㎡이상에서 330㎡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 단위에서 이 면적 사항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蔣昭秀 専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財務局長과 課長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조금전 보고사항이나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재산의 전대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삼자에게 전대했을 경우에 첫번째로 전대한 사람이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령 처음 전대한 사람이 100평을 전대했다 하면 그 전체를 다 제삼자에게 전대를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 내용이 여기에 상

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처음에 위탁받은 자가 제삼자에게 전대할 경우에 전대를 할 수 있는 재산의 규모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야 된다, 아니면 전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위탁자와 전대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 전체를 못 한다, 일부분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예를 들어서 팔각정에 지금 현재 위탁했을 때 그 분이 제삼자에게 전대를 했을 때 분야별로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1층, 2층 뭐 아니면 옥외 이렇게 있는데 그걸 옥외 1층, 2층을 구별해서 다 전대를 해주고 본인은 거기에서 영업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거기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과거에는 조금 전에 蔣昭秀 専門委員께서 심사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전대제도란 것을 불법시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걸 승인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吳錦南委員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과연 팔각정을 3억에 체결했다 할 경우에 이 분이 부분적으로 나눠서 1억에 몇 십만원씩 받는다 해도 구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건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吳錦南委員 그렇다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애초에 저희 행정기관과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항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제로 해가고 수탁을 주는 그 범위 내에서 전대를 주기 때문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봅니다.

○吳錦南委員 아니 시설물이 아니구요 가령 3억에 임대한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분적으로 네개로 나눈다면 1억씩 받고 준다면 4억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 있는 자만이 살고 없는 자는 또 거기에 휘말리는 이런 제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이를테면 3억에 전체를 수탁 받은 어느 수탁자가 3억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전대를 줘야 된다면 수탁을 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받아야 된다는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위탁자에게 당신이 특정부분을 전대할 때는, 아니면 전체를 전대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전대해야 된다는 그것을 규정하는 그결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탁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수탁받은 자는 공공시설을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정부분의 수익은 보장이 돼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 생각에 그결 합당하게 해 준다고 할 경우에 있는 자만이 쉽게 얘기하자면 이자놀이가 되겠지요.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없는 약자는 어렵지 않느냐 그 제도가.

○財務局長 董連浩 반드시 그게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우리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탁을 받은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았을 때에 구청에 납부했던 금액 이상으로 전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쩌면 수탁자가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별한 이윤을 주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만 그것 조차를 저희들이 수탁을 하면서 전대제도를 인정하는 이 마당에서 그것조차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吳錦南委員 수탁자한테 어떤 제재를 한다던가

이런 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줘 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에 놓든 간에, 제삼자에게 임대를 해주던 간에 수탁자한테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관리형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탁을 주면 그 사람이 얼마를 놓든 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이를테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수탁자로부터 전대를 받은 사람도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탁자에게 무제한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 하에서 전대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전대가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셔서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잡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공공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입찰 본 분들이 1지역, 2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안돼 가지고 다시 우리 종로구에서 재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수탁자의 얘기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여기에도 그러한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수탁자야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구에서도 간접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상세하게 더 깊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다음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대상 조정 문제입니다. 33㎡이상을 330㎡이상으로 하는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이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떤 조정에 대한 입방에 대한 조정을 하시고 싶은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 중에 용도폐지 심의대상을 종전에 33㎡에서 330㎡로 올리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에 저희 구에서 이 내용으

로 제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용도폐지 하는 재산의 대부분은 거의다 매각을 전제로 용도폐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잡종재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그 점을 한번 유념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용도폐지 심의대상을 이렇게 330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지금 대부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산하의 대부분의 구에서 이러한 과제로 조례를 지금 개정을 이미 했고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상위 서울특별시로부터 조례준칙(안)이 내려올 때도 이러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러한 조례개정을 할 당시에 별도 구에서 용도폐지 심의대상을 구 단위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용도폐지된 재산이 잡종재산화 돼서 별도로 매각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설령 330㎡ 미만의 재산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용도폐지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2차에 가서는 거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吳錦南 前 副議長께서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다른 한가지 물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기관에서 수탁자, 전대자가 또 전대를 했을 경우도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수탁자가 일단 전대를 하고 나서 전대자가 다시 전대하는 것은 허용이 안됩니

다.

○金福同委員 그런 것이 궁금하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각정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공단에 넘겼죠?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財務局長 董連浩 예.

○金福同委員 그렇다면 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정해진 사람을 보면 경영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팔각정의 경영자가 바뀌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서너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알아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계약했던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사람 제2, 제3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관리해서 마침내 우리 기관에서 잘못되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러니까 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국장께서 관리해주시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우리 전문위원회한테 한번 문의해보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 내용에 내용신설에서 24조2항에 공유재산의 전세제도 도입, 대상재산의 전세금 산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安載弘 전문위원! 답변하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드릴까요? 양해하시면

○委員長 安載弘 국장님! 답변하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丁炳煥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전세제도 도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시설을 대부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전세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 하나 보고를 드리자면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은 그라운드에서 축구를 하고 관람석에서 관람을 하는 시설 외에 주변에 많은 부대시설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수영장이라든지 각종 판매시설 이러한 것이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전의 규정대로 대부제도로만 한다면 연간 대부료만 그냥 그 재산을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대부료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제도를 도입하면 전세금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전세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에 매년 받을 수 있는 대부금에 상응하는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세금을 확보한다는 얘깁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역산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우리 구 금고에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를 상회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월드컵 주경기장을 건설한 행정기관은 거기에 투자한 막대한 돈을 사전에 전세금이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미리 확보를 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사전에 미리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십억 얼마 규모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대한 보증금 형태로 전세금을 사전에 납부를 하고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본인이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 이득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전세를 보증 받는 기간동안에는 계약된 기간동안에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 시설을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제도의 이점을 고려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공공시설을 단지 전세제도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전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입된 시설비를 조기 확보하고 들어온 사람의 이윤을 일정한 기간 보장을 해주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 단위에서 그런 행태의 대형복합건물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 향후에도 그런 게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위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축구경기장의 예를 제가 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丁炳煥委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제2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요지 주택재개발 이내에 공유토지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 이율을 즉 말하자면 대부자가 부담했는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타당하다고 보는데 대부료가 장기간 연체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지 않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만약에 대부자가 상환을 앓고 이자를 계속 다년간 미루고 있을 때는

○**財務局長 董連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재개발 지역 내의 공유토지에 대한 대부료 연체이자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 각종 우리 세외수입을 징수를 함에 있어서 이런 대부료 형태의 그러한 돈이 체납 지방 세외수입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우선에 소요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극단적으로는 급여까지 압류를 해가지고 그러한 수단으로 연체된 대부료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확보된 재산이 없다면 그럴 경우에는 별 수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어쩔 수 없이 불납결손하는 그런 절차가 이행되었습니다.

○**丁炳煥委員**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국장님, 다른 세수에도 연체이자가 10%씩 가산됐는데 이것을 감면했을 때는 우리 세외수입에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죄송하지만 양해하신다면 우리 재무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잠깐만요, 회의진행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답변을 하시고 董局長이 답변을 하시다가 과장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위원장 허가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한 겁

니다.

○委員長 安載弘 趙課長님! 답변하세요.

○財務課長 趙秀完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丁炳煥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감면제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체가 감면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있는 그 대상자 이러한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丁炳煥委員 기초생활보호자를 감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주택개발과 같이 공유토지 대부분을 받는 건데 그것을 감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財務課長 趙秀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개발구역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거주하는 공유지 점유자는 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반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일부분을 점유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기초생활보호자가 많은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부 시간같은 데 점유하고 있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점유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보조금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 그 자체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개정요지가 세부적으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감면해준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이 무조건 10% 이율을 부담하던 것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하니 여기에서 좀 단서조항이 첨부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유있는 사람도 이것을 감면해준다는 내용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財務課長 趙秀完 이것은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규칙으로서 구청장님께 현재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서 다시 개정이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丁炳煥委員 세부적인 단서조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玄壽漢委員님! 질의해주십시오.

○玄壽漢委員 질문이 광범위하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공유재산하고 공공용 재산하고, 기업용 재산, 보존재산 그 네가지만 나열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

○委員長 安載弘 예. 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우리 蔣昭秀 專門委員께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 유인물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 중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공용재산 중에는 저희가 청사로 쓰고 있는 구청이나 동청사 그제 상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공용재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공공용재산은 어린이집, 경로당 이러한 시설물들을 공공용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해가지고 공공용재산으로 보고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용재산은 지금 저희가 구 산하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기업용재산으로

○玄壽漢委員 구민회관하고 팔각정하고

○財務局長 董連浩 또 팔각정도 있고 구민생활관 그런 게

○玄壽漢委員 그 외에는 없어요?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제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玄壽漢委員 상징적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죠.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현재 기업용재산이 어디 어디에 있는가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玄壽漢委員 어디서 무슨 수입이 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쉽게 아는 것은 구민회관, 구민생활관 해화동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팔각정

○財務局長 董連浩 그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玄壽漢委員 그 외에는 없어요?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리고 보존재산은 관내

에 있는 문화재

○玄壽漢委員 문화재인데 그것이 어디 어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어디예요? 구 재산으로서 구체적인

○財務局長 董連浩 보존재산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재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가

○玄壽漢委員 잡종재산은 많을 거고 그러니까 보존재산하고 기업용재산하고 공용재산은 동청사하고 우리 구청사나 빼놓고라도 세가지 전부다 나열해 가지고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전부 어디 어디 있고 크기가 어떤 것까지도 열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 끝나기 전까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조례개정(안)이 궁금해서 하나 묻겠는데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세균등 할이라고 주민세 내죠? 세가지인가 몇 가지인가 나오는데 이번에 금년도 주민세균등할에서 지방교육세라고 해서 몇 % 올랐죠? 언제 올랐다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없이

○財務局長 董連浩 금년에 주민세는 인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내용은

○玄壽漢委員 주민세 말고 지방교육세라고 해 가지고 20%인가 몇 %가 증액이 돼서 붙어나오네요.

(○丁炳煥委員 議席에서 - 그래서 주민세가 6,000원인가)

정부로부터 혹은 우리 구로부터 주민들에게 홍보도 없이 지방교육세라고 해서 붙어 나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떻게 돼서 나오는지 국민이나 주민한테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 가지고 이 기회에 여쭙보려고 그래요.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답변을

○委員長 安載弘 답변하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느 시기부터 주민세 내에 지방교육세가 포함이 돼서 통과가 됐는가는 제가 시기를 잘 모르

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작년엔 없었어요.

○財務局長 董連浩 아닙니다. 주민세 내에는 순수한 주민세와

○玄壽漢委員 순수한 주민세가 5,000원인데 거기 에다가 5,000원 붙은 것은 좋은데 5,000원 말고 따로 붙어 나와요.

○財務局長 董連浩 주민세가 6,000원인데 6,000원 안에는 주민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합해 가지고 주민세가 통상 6,000원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자면 재산세의 경우에 거기 내는 재산세도 있고 소방공동시설세도 있고 합해 가지고 재산세라고 통상 얘기가 됩니다. 라는 방침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의 경우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민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합해 가지고 주민세 형태로 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玄壽漢委員 제가 주민세 말고 소득할주민세를 5만원을 냈는데 금년에 6만 몇천원으로 지방교육세가 붙어 가지고 부과됐더라구. 정부에서 홍보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얘기도 없이 무조건 부과되니까 일반적인 주민세 5,000원 내던 사람들이 거의 안내고 있거든. 그러면 무슨 대책도 없이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려고만 하니깐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委員長 安載弘 괜찮으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께 가서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대문 제가 아까 혼동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팔각정을 예를 들면 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자가 되죠? 수탁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제3자에게 그러니까 전대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전대는 이루어지 지 않는 거죠?

○財務局長 董連浩 인정할 수 없는 거죠.

○委員長 安載弘 두번째로 그런 경우에 전대를 받은 수탁자가 전대자에게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제4조4항 단서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줄에 보면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나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로부터 1억이라는 돈에 수탁을 받았다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 1억 3,000도 받을 수 있고 1억 5,000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면 2,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소위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委員長 安載弘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84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84조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전대만 명시하고 있는 거죠. 사용승인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에 대한 사용승인허가를 한 것으로 하고 제1항에 위탁자는 위탁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전대에서 관리비용과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위 위임사항은 없다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시조례가 이렇게 돼서 구조레도 시조례를 쫓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맞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이렇게 되는 경우에 관리의 문제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관리의 문제를 좀더 합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문이 신설된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委員長 安載弘 두번째 6조를 보면 용도폐지 심

의대상이 종전에 쉽게 얘기해서 10평에서 100평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런 경우에 구 입장에서 볼 때 시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도폐지 대상이 많겠지만 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100평 이상으로 잡는다면 실제로 그 이하가 되는 100평 이하가 되는 토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국은 해당 집행부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아까 吳錦南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용도폐지를 하는 대상을 33㎡에서 33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용도폐지를 하는 행정재산의 대부분은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화 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매각합니다. 매각할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별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렇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한번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安載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委員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董連浩 財務局長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委員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

로구구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委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해야 하는데 몇 시까지 할까요? 2시까지 할까요? 1시 30분이요? 좋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

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8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2. 主要懸案業務 報告의 件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2항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안건은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로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도시관리국, 그후에 건설교통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존경하옵는 財務建設委員會 安載弘 委員長님! 그리고 吳弼根 幹事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에서 도시계획 관련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계획 관련 소관 課長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99년 12월부터 都市計劃課長을 맡아서 근무했던 鄭鎭皓 課長이 土木課長으로 금년 8월 1일자로 보임이 되고 그 후 임으로 李廷花 課長이 보임이 됐습니다. 李廷花 課長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都市計劃擔當業務主事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도편달해준 덕분에 금년 5월 서울시 승진시험에서 1위를 해서 금년 8월 1일자로 승진, 보임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委員長님과 委員님

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올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업무 중에서 다수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또는 장기적으로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경관지구 해제 등 재정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관지구가 서울시에서 우리 종로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약 16%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경관지구가 많다는 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종로가 그만큼 경관이 수려한 명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경관지구 때문에 또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安載弘 委員長님이나 委員님들께서도 작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서 재정비를 하자 하는 위원님들의 독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 전 팀이 직접 약 3km에 달하는 저희 종로구 경관지구 전 지역을 현장조사를 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 재정비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의견청취 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이거나 녹지축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경관지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 따라서 노후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고 해제까지는 곤란하지만 인접해있는 일반주거지역과 여건이 동일해서 일반주거지역과 차별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이런 지역에는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일부 고도 차가 있는 지역은 층수를 1층 정도 완화하는

것으로, 그 다음 대로변에 인접한 지역은 층수 완화와 더불어서 건폐율을 10~40%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지구 해제를 요청했고 그 다음 12개 지역에서는 층수 완화 또는 건폐율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 3월 20일 위원님들 모시고 이 자리에서 고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상정을 했더니 서울시 실무팀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제완화나 규제완화를 요구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부분적으로 한두 곳에 한정해서 이렇게 해제요청을 했기 때문에 별 부담을 못 느꼈습니다만 이것은 워낙 방대한 지역에 걸쳐서 해제요구나 규제완화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무진들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도있게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6월 초에 보완지시가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좀더 자료를 구체화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밀하게 작성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좀더 자료를 보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다 보완을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자료라든지, 실제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 또 규제완화를 하고자 하는 지역과 인접지역에 구체적으로 차이가 뭐냐? 계량화 해달라. 높이가 좀 정확하게 몇m가 나느냐? 하는 요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조경의무면적 확보방안 20%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화해달라 하는 보완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작성을 해서 이미 서울시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

해서는 빨리 서울시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委員長님이나 委員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안 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평창동 여객 여객자동차정류장 해제의 건입니다. 이 건도 굉장히 장기화된 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지난번 구의회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까지 주신 사항입니다. 평창동 148번지 일대 약 7,700㎡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77년도에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90년도부터 과거에 유성운수가 사용하다가 유성운수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지금은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빨리 해제를 해달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96년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고 그 해제신청만 해도 저희들이 다섯번 했고 저희들이 반려를 하다 보니까 과거 저희 구청에서 '90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행정소송까지 낸바 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낸바가 있습니다만 당시 재판부에서는 저희 구청과 시청의 손을 들어줘서 결국은 토지소유주가 패소를 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의견을 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맞는 것 같다. 해제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데 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98년도에 또 도시계획심의 요청을 했더니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부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에 다시 토지소유주로부터 해제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부지를 해제하려면 반경 3km 안에 주소를 둔 버스회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북 정릉에 있는 도원교통

으로부터 의견조율을 했더니 도원교통에서는 당초에는 별 의사가 없는 것처럼 의견을 줬다가 그 다음에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매입할 의사나 임대할 의사가 있다 하는 이런 의견이 왔고 또 그쪽으로 지나가는 유성운수가 차고지를 저희들이 볼 때 은평 공영차고지에 임대로 이미 확보한 것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해제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구청의 입장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정리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 7월에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했더니 해제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저희들과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원교통에 문의한 결과 역시 도원교통 입장에서는 토지소유주가 판다면 자기들도 살 의사가 있다 이런 의견을 보낸 것 같고 또 대중교통과에서는 지금 당장 차고지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그 노선이 유지되는 한 차고지로 쓰거나 회차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걸 해제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걸 반려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당분간 사실 저희들도 난감한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자동차여객정류장 부지에 관련된 지침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88년도에 서울시에서 작성된 지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침이 지금 조금은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여건에 맞지 않는 지침이 일부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 지침 자체를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바꿔주도록 서울시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개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진구역 6지구 재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진구역은

전 면적이 약 77,000㎡ 정도 됩니다. 19개 동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게 '79년도에 지정이 된 겁니다. 현재 2개 구역이 재개발사업이 끝났습니다. 제일은행하고 서울은행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지구는 과거의 무과수제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성정육점 그 골목으로 해서 명원이나 한성음식집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8,655㎡인데 그 중에서 대지로 쓸 게 6,700㎡, 공공시설인 공원으로 나갈 게 2,000㎡가 되겠습니다. 이걸 건축계획이 3층과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0층인데 지하7층, 지상 20층인데 피맛골을 살리기 위해서 피맛골을 그대로 둡니다. 피맛골은 그대로 두고 피맛골에서 종로변까지는 3층으로 건축을 하고 그 다음 피맛골 뒷쪽은 20층으로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7월 6일자로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까지 나서 이제는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입니다. 9~10월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고 확정이 되고나면 바로 내년 봄부터는 철거와 더불어서 공사가 착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동대문 지구단위계획만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사실 저희들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 동대문 상세계획구역은 '96년도에 역세권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면적이 동대문에서 신설동에 이르는 굉장히 방대한 구역입니다. 약 59㎡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구역이고 동대문에서 신설동에 이르는 구역의 여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워낙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이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바뀌면서 또 교통영향평가가 부과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돼서 작년 초에 확정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또 이게 상정돼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다소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워낙 계획이 방대하

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구안마을 특별설계단지는 금년 초 1월 달에 확정이 됐고 지금 건축허가심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30층 3개동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2개동은 아파트고 1개동은 오피스텔로 이렇게 건축될 계획입니다. 그게 준공되면 그 부분이 아마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인근의 인도변 개발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90,000㎡ 중에서 자생적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던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다른 변화가 없으면서 자생적 정비구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토지계획이용확인원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세계획구역으로 표기가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아예 해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해제를 확정짓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우선 왕산로 북측에 12m 노선삼각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35m 후퇴한 지역벨트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금년 8월 21일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심의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금년 말쯤에 서울시도시계획본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도 작년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진행된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도시계획법이 진행되면서 과거에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의무적이 아니어서 서울 시내에 구분된 지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풍치지구 해제된 지역만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나머지 2~3종 구분이 없어서 일반주거지역이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디만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3003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1~3종 각각 공히 용적률과 층수를 따로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1종 같으면 150%에 4층, 2종은 200%에 12층, 그 중에서 7층 또는 12층으로 이렇

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3종은 건폐율 250%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03년 6월까지 확정이 안되면 의무적으로 2종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지역이 저희 종로 전반적인 지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쯤 착수해서 2003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은 내년 6~7월은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도에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현행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인 경우는 2002년부터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매수청구권을 토지소유주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매수청구권은 토지소유주가 도시계획시설을 따로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매수청구 요구가 있으면 저희 구청에서 선택할 게 딱 세가지입니다. 해제를 해주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완화해줘야 합니다. 이 세가지 사항 중에서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제 2년간 또 유예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04년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조속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쪽 자료에 보

면 현재 1차 검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공원을 포함해서 총 119건인데요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이 이 보상비만 해도 1,260억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돈입니다. 실제로 저희 구가 1년 투자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규모와 비교해볼 때 굉장히 큰 액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12월쯤 되면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시점이 되면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8쪽에 자세하게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시다만 우선 위원님들께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수 주민들의 이해와 관련이 된 사항이거나 위원님들이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장기 민원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거나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성취하시고 가내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안녕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강형욱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수방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 추진사항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건설교통국)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재무국을 포함해서 3개 국이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은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이기 때문에 7월과 두 번에 걸쳐서 내린 폭우에 피해나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사안은 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무라고 판단이 돼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종로의 미래와 앞으로 현실을 동시에 업무수행을 해가는 핵심부서입니다. 모쪼록 이 기회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한 李廷花課長과 그리고 토목과장으로 부임한 鄭鎭皓課長님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소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셔서 언제나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공헌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께서 하시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능하시면 도시관리국을 먼저 해주시고 그 후에 건설교통국 순으로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河徹昇局長님께서 세세하게 보고를 드렸습시다마는 청진지역 6개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진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고드릴 바와 같이 그 지역은 19개 지역으로서 2개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죠? 그러면

이번에 17개 지역이 8월 17일날 건축허가가 됐는데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까? 수복개발을 하기로 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입니다. 丁炳煥委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전면 철거방식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丁炳煥委員 그래서 설계까지는 전부 완료가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분양처분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바로 철거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상업지역으로서 임대인과 가옥주하고 여간에 말썽이 많은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마무리가 다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청진동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토지 소유주라기 보다는 임대를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다년간 사실 생업의 터전을 잃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임대하고 임대인들과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들과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라는 예상이 들고 다만 도시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관에서 추진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토지소유주들의 의사에, 토지소유주라고 하면 결국 토지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토지 소유주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만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소 불협화음 예상이, 어느 재개발구역이나 마찬가지로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사항도 또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불협화음이 최소화되고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당초에 청진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는 우리 구청도 같이 개발한다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맞습니다. 丁炳煥委員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당초에는 청진구역이 지하권통합개발로 지하권으로 전면 터서 그야말로 서울의 명소, 세계적인 명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지하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97년도에 지하권통합개발을 해서 전면 19개 지구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IMF를 맞으면서 그렇게 하려면 큰 유수한 건설회사가 몇 개 기업이 참여해서 재개발을 해야 됩니까마는 IMF가 터지면서 당초에 나름대로 뜻을 가졌던 그런 대기업들도 수익성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또 조심스러워지면서 사실 그게 무산이 되다보니까 그와 같은 전면 19개 단위를 통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은 사실 백지화가 됐습니다. 이미 추진중인 6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들이 재개발구역을 해제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대단위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해제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해제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는 해제는 하되 조금 최소한의 도시계획도 로라든가 최소한의 도로망을 확보하는 이런 보완 대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해서 함께 그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그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丁炳煥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식의 전면 재개발은 지금 백지화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까지 중 분류를 하기 위해서 2002년 9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지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9월 1일부터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중 분류를

는 것과 이러한 것과 연관,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낡았습니다. 낡고 낙후되어 있어서 개발이 절실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게 바람직하겠습니까마는 또한 측면에서 보면 20층보다 30층이 반드시 낮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층화되다 보면 오히려 슬럼화가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토지주들의 사업성도 유지하면서 또 도시의 미래도 생각하는 적절한 선에서 층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종로6지구 같은 경우 20층 정도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20층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고도나 층을 묻는 것은 녹지공간에 대해서 신경쓸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고도를 제한하지 않고 층수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렇게 도시계획이나 개발할 때는 분명히 녹지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주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녹지공간은 꼭 필요하고 이번 청진6지구 재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6지구가 총 8,700㎡ 됩니다. 6,700㎡는 대지로 해서 그 안에 건물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겠죠. 나머지 2,000㎡ 약 700평은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그래서 만약 6지구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지금 삼성정육점 그 골목 일대로 해 가지고 약 한 육칠백 평 규모의 소공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리고 1급지, 2급지, 3급지를 기준해서 얘기하는데 1급지는 고도나 평수가 용적률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방금 말씀하신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그야말로 완전한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저층의 단독주택 중심으로 현재 되어 있는 지역은 앞으로 주로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텐데요. 거기에는 층수

가 4층으로 제한을 받고 용적률도 150%로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종주거지역은 조금 저층의 빌라라든지 연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2종으로 지정을 받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은 용적률은 200%, 층수는 12층으로 고시가 되는 지역이 있을 거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2종이면서 7층으로 제한이 되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조금 큰 대로변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은 주로 3종으로 되겠는데 거기에 층수 제한은 없고 용적률은 250%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용적률이 300%까지 되지 않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는 300%입니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종별 구분 없이 300%입니다마는 작년 7월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모두 낮췄습니다. 3종도 250%로 낮추고 2종 200%, 1종은 150%로 낮추되 다만 그렇게 되면 토지소유주들 주민들이 충격이 너무 크니까 한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 그래서 2003년 6월까지 유예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3년 6월까지 주거지역에 300%로 적용을 받습니다.

○金福同委員 재개발과 조합 구성간에는 차이가 많습니까? 주택조합이라든가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재개발하고 용어가 틀리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재개발하고 직장 주택조합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 합니다. 재개발조합은 일정한 지역을 전제로 합니다. 일정한 지역 내에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가지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그 범위 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 이 분들이 재개발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직장조합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일정한 구역을 전제로 하지 않고 여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정해 가지고 그 분들이 땅을 사서 그 분들이 어디다 땅을 사 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직장조합이 되겠고

재건축은 재개발과는 아주 유사합니다. 똑같이 지역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일반 단독주택 지역의 기존의 건물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게 재개발이라면 재건축은 기존의 공동주택 연립이나 빌라 모여 있는 지역에 연립이나 빌라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게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동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왕에 건축법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저희 동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신동 1번지 일대를 알고 계시죠? 제가 얘기를 드린 다음에 답변을 주시죠. 충신동 1번지 일대가 아주 낙후된 동네고 주택으로서 가치성이 없습니다. 약 3, 40년 전에 난립된 주택으로 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선거 때 공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재개발 아파트나 재개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해서 지역 주민에게 설문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문을 했습니다. 1차 설문을 들렸을 때는 약 20% 찬성으로 나왔고 2차에 설문을 들렸을 때는 60%, 65% 설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하고 설문을 3차 들렸습니다. 2001년 4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설문을 들렸는데 주민 대다수 85% 이상이 아파트나 재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설문문에 답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위원들이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종로구에서 상권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입지여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지역이 교통여건은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도 그리고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 게 바람직

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출발했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어떤 결론이 났을 때 일부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재개발에 관한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가급적이면 고층 과밀화된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충신동 그 지역은 조금 고지대 아닙니까? 여건이 좀 고지대고 하니까 층수를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높게 받을 수 없지 않았는가 그러한 것이 염려가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조금 냉정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추진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福同委員** 현재 컨설팅회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뽑고 가설계도 뽑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주위에 문화재 성곽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곽으로부터 주위의 동승동 아파트지역에 공원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 800억을 투자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거기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육안으로 봤을 때 35도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높아지면 좋다. 모양도 좋고 관광지가 될 것이라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역시 우리가 아파트를 한다면 현재 기존에 있는 성곽 주위의 소공원을 20m를 잘라서 쪽 같이 녹지공간으로 해서 연계해서 동승아파트와 같이 연결 공원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서울의 도시공간 속에서 좋은 공원이 생키라곤 봅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이나 서울시에 의논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도시관리국과 관련지어서, 李炯述委員님! 玄壽漢委員님이 먼저

○**李炯述委員** 玄委員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한테 회의진행 부분에 한가지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분이 했는데 딱 한 분이 30분씩 위원장이

제동을 걸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건설교통국까지 하려면 오늘 밤 10시 되기 전에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위원장이 질문과 답변을 좀 줄여 가지고 다음에, 한 번 하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돌아가서 할 것 아닙니까?

○委員長 安載弘 알겠습니다.

○李炳述委員 꼭 하고 싶은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을 한 분에 30분씩 한다든지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한 15분 한다든지 20분 한다든지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십시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河徹昇 都市管理局長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들한테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李廷花課長님이나 鄭鎮皓課長님께 정말 주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완화 주민의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하겠습니다. 평창동 296-2 일대, 신영동 5번지 1호 일대 또 홍지동 93-2 일대 이번에 한 10여 군데를 푸시면서 아주 세분화되고 여러 가지 부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주민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치사를 대신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 지적한 평창동 296번지하고 신영동 5번지 또 홍지동 93번지는 산꼭대기야. 산꼭대기고 4층으로 40%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3층으로 풍치지구 규제를 받고 있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산꼭대기는 4층이고 이 밑으로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8에서 10층까지 지어야 그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물론 환경적인 문제 스카이라인 때문에 경관 때문에 그런 차이를 두는 것은 우리같은 사람 이해가 갑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산꼭대기도 4층, 이 밑에는 3층 너무 동떨어지게 규제완화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불만의 소리가 높고 비밀비재 하니까 앞으로 일 하실 때 좀 세검정 지역은 참고하셔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아까 평창동 지역에 安載弘委員長님 계시지만 148-16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귀빈예식장 앞에 버스가 종점이 돼서 정차를 하고 있고 일부는 작년엔 지

역신문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방치차량들, 세금 안내고 방치하는 차량들을 거기다 주차하게 실어다 두겠다고 신문에 난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유성역에서 쓰던 평창숯불갈비 옆에 주차장으로 돈도 안내고 음식점 주차장으로 4, 50대 들어가게끔 쓰고 있습니다.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도면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귀빈 앞에 버스주차장이거나 이거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하천 풀장을 없애고 풀장이었습니다. 풀장, 보트장인데 그거를 다 없애고 복개를 했던 말입니다. 복개 위에 버스종점이 썼거든. 지금 해제되면 아까 개인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쪽인지 도면을 가지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玄壽漢委員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귀빈예식장 바로 그 앞쪽 복개지가 아닙니다. 거기 조금 못 미쳐 올라 가 가지고 조금 더 내려와서 동사무소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李廷花課長님! 玄壽漢委員님이 다리가 아프니까 가서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玄壽漢委員 왜냐하면 민감한 사항이예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귀빈예식장이 여기고 지금 버스정류장이 옛날에 유성건설에서 쓰던 건물이 있고 버스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회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나는 이쪽의 공터가 뭐였느냐 하면 옛날에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용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도 알 수 없이 전부 쓰고 있기 때문에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사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데는 다른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玄壽漢委員 귀빈 앞에 폐차가 아니라 세금 안내고 방치차량 끌어다 놓은 데는 귀빈예식장 하천 복개한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한때 논의가 됐던 지역이 거겁니다.

○玄壽漢委員 신문에 그게 났었거든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귀

빈예식장 바로 앞쪽에 복개했던 그 지역을 하려다 지금은 안했죠.

○玄壽漢委員 그게 신문에 나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대단히 민감해서 이것도 다시 완화시켜 가지고 뭐 해서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땅은 아닙니다. 그 땅과 전혀 무관한 지역입니다.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李炯述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내가 질문을 하면 가장 시간을 많이 끄는 委員인데 앞에 委員들이 좀 짧게 하라고 하는데 저도 좀 짧게 하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계획법이 7월에 바뀌어서 1종~5종 그중에 여기 유인물 6쪽에 일반주거지역 1~3종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이 저도 건축 부분에 아주 관심이 있는데 1~5종 여기에서 2종이 줄어 가지고 3종으로 줄여졌는데 기왕이면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1종은 뭐고 2종은 뭔지 이런 유인물을 같이 붙여주면 위원들이 주민들이 물을 때도 충분히 답변하기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을 시키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 유인물을 보고 때에 따라서 배우고 공부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박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용역비 1억 6,000 만원을 들인다고 했는데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의 용역비 1억 6,000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2003년 6월까지 지금 저희 관내의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전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중에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동그라미가 되어있는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게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여기는 지금 평창동지역 관내도를 가지고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저희 종로관내 전 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이 다 퍼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1종으로 할거나, 2종으로 할거나, 3종으로 할거나 하는 지역여건을 검토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수립해놓은 지침이 있습니다. 이리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1종으로 해라, 이리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은 2종으로 해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용역회사가 일일이 현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李炯述委員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점은 제가 의정활동을 지금까지 10년을 하면서 상세계획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처음 한번 주면 그것 가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두번 나가고 세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결국은 용도폐지 해가지고 용역비만 버리고 일도 안하고 그 귀한 세금을 갖다 버리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행여나 1억 6,000만원 갖다 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1~3종 일반주거지역을 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과거에 관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이고 온 종로구민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잘 지도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여러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추진해 가지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매수청구권이 10년이 지나게 되면 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로구 가회동 가운데에 가면 중앙로라고 하는 도로, 그 중앙고등학교에서 현대건설 가는 거기 한 300m되는 도로가 '91년도에 서울시고시 181호로 2m 후퇴를 해가지고 지금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보상도 안 해주고 집은 뒤로 물러나라고 그러고

집을 짓는 사람은 2m를 그대로 도로로 기증을 하고 집을 지어라. 그때 시작할 때 왜 그랬느냐 하면 가회동 일대가 한옥보존지구라고 해서 고도 10m이상 집을 못 짓도록 할 때 오직 대한민국 거기만 13m로 특혜를 줘 가지고 한층을 더 짓는 걸로 해가지고 나라에서 개인 땅을 내나라, 기부를 해라 해서 주민들과 합의해 해 주었습니다. 그 도로가 '91년도에 가회동 일대 전체가 16m 고도가 풀려버렸습니다. 풀렸으면 10m를 13m로 해준다는 인센티브 3m가 그 지역 전체가 16m 풀렸을 때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런데도 종로구청 건축과는 그 도로변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2m를 후퇴하도록, 후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거는 도시관리국 담당국장님이 종로구민들의 뼈아픈 저거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행정을 해나가는 거야. 옛날 그 관료주의 그게 몸에 배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법이 바뀌었으면 그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청장님을 모셔다가 계동 길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답변이 길을 못 낸다고, 종로바닥에 6m도로면 넓지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그러고 돈이 없어 못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동길은 고건 시장님 지침으로 예산까지 확정을 지어 가지고 25억이란 돈을 그 계동길 넓히는 데에 각 가가호호 유인물을 집집마다 보내줬습니다. 종로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6m도로이면 이걸 10m하면 종로구청에서 관장하는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局長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지정을 하고 도시계획확정을 짓는 저거는 서울시가 아닌 종로구청 소관이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맞습니다.

○李炯述委員 그 도로가 국장님이 봐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개인 땅을 공짜로 국가에 기부를 하라고, 이거 무례하지요. 지금도 가회동 그 북촌마을이 10m고도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내 골목만은 10m로 해줄테니까 땅을 2m씩 공짜로 기부를 하라고 해서 주민하고 합의를 해놓고 그 뒤에 '91년도에 16m로 전체를 다 풀었거든. 그러면 13m란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로구청 건축과는 계속 그 도로변에 집을 질 때 2m를 공짜로 기부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으니 주민들에 대한 뼈아픈 거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공무원으로서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이 상황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법도 현존하는 법에 대해서는 따라야 하는 이게 또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괴롭습니다. 다만 죄송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깊은 배경을 제가 알고 있지 못 했는데 그 배경을 알았다면 미리 그 불합리한 법규정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했더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라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도로관장을 하고 있는 토목과하고 의견을 나눠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일단 선이 그어져있다는 말씀이죠?

○李炯述委員 도시계획선이 문제가 아닌데 굵기도 얇고 서울시고시로 2m씩 후퇴를 하고 너희들 땅을 나라에 공짜로 기부를 하라는 얘기거든.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그 2m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李炯述委員 보상을 해주려하니까 돈이 아깝거든. 어떻게 종로구청의 행정이 남의 땅을 공짜로 들어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여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서울시고시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이나 현재 건축선 후퇴를 고시한 이 고시 자체가 불합리하다 하는 판단이 되면 서울시에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局長님! 오늘 현재로 많은 주민들하고 지금 대동정보상업학교하고 만나 가지고 불목이 생기고 계동 주민하고 원서동 주민하고 싸움을 붙여서 아주 대단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계동 도로문제가 거기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불과 300m되는 도로가 지금 현재 6m씩인데 2m씩을 후퇴하면 그 10m도로를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정해놓고 집을 지을 때에는 2m 후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10m 도로를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를 주민들이 아는데 실제 굵지는 않고 고시만 정해놓고 집 지을 때만 규제를 한단 말이야. 이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으면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선을 굵도록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더니 진행과정도 안 되고 지금 대동정보상업학교 거기에서 계동길이 울퉁불퉁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 도로를 담을 헐어버리고, 담을 헐었어요. 느닷없이 그쪽 교문을 하나 더 뱉니다. 종로구청 행정은 원서동 대동상고 길 뚫린 옆에 도로를 뚫고 난 자투리가 조금 남았는데 거기를 녹지공간을 만들어줘야지 그걸 대동상고에다 팔았는 것 같아. 그 부분이 남쪽인데 그걸 팔았는지 안 그러면 종로구청 소유로 그대로 있는지 그 재료를 좀 주시고 지금 계동, 원서동 주민들을 이 간시켜 가지고 싸움이 붙도록 한 건 종로구청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 그 길을 넓히는 걸 못 한다고 답변한 그거를 케이블티브이에서 봤대요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학교에서는 바로 계동길은 넓혀지지 않기 때문에 남쪽 담을 헐어서 그 자리에 강제적으로 교문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죽어도 남쪽으로 담을 못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계동주민들이 그쪽에 내라고 했다, 원서동 주민들은 왜 계동 주민들이 그쪽에 길을 내라고 하나 해서 싸움을 붙인 원인제공을 한 게 집행부 종로구청입니다. 이런 점도 주민들의 불화가 조성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계동길은 이 부분을 고건 시장님께서 가가호호 도로를 넓혀서 확대보상을 해줘서 25억이란 돈을 거기에다 투입하겠다고 유인물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계동길이나 가회동 전체에 들어가는 돈은 종로구청에서 직접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서울시 예산에서 서울시가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 발전에 종로구청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로를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이 도로지역 여건에 대해서는 가장 소상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게 좋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방금 말씀대로 북촌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북촌의 정상적인 지역 주거환경,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 계동길의 확장이나 정비 여부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계동길을 확장한다고 명확하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계동길 정비로 해서 일부 예산이 잡혀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걸 확장할 거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다른 정비방안을 찾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팀에서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한다, 확장하지 않는다 하고 결론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 북촌정비하고 같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약 1,00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북촌을 가꾸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북촌 환경정비에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걸 지켜본 뒤에 결론을 따르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炳述委員 委員長** 본 위원이 시간을 보니까 10분했는데 한 5분만 더 할게요.

○**委員長 安載弘** 아닙니다. 15분 쓰셨어요.

○**李炳述委員** 가회동 길이 우리 고건시장님이 가장 신경쓰는 가회동 길. 정말 우리 종로구청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귀한 소나무도 심고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북촌이 우리나라에 외국사람들이 오면 전부 모양새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감사원 올라가기 직전 좌측에 한국화약 김성연 회

장집 거기부터 그 다음이 삼한기업 최종한 회장 집입니다. 이 도로를 최종한씨 집이 아주 급경사인데 집을 잘 가꾸어주기 위해서 종로구청과 서울시가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2차 보차도로라고 하는 20m도로를 이 쪽을 줄여 가지고 그 개인집 들어가는 주차장길을 그렇게 설계해서 만들어 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주민들이 난장판이 나서 그결 못 하도록 내용증명도 보내고 대모도 하고 그 집 축대 쌓는 걸 21m에서 16m로 했는데 결국은 16m로 하겠다 하고 그 축대를 조금 더 올려 쌓았어요. 자기 집을 대지를 위아라 꼭대기를 지으려고 하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 토압 때문에 결국은 2차보차도로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폭을 원상대로 20m도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그 집 옹벽 칠 때 도로편으로 시멘콘크리트가 많이 나왔어요. 도로지하로. 그래서 김성연회장 집에서 감사원까지 올라가는 좌측편에 수목을 못 심습니다. 그 밑에 시멘콘크리트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께서 며칠 전에 근린공원 수해식을 할 때 가회동에 와 가지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빨 빠지게 이렇게 해서 가꾸냐고, 종로구청이.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청장님의 답을 받아냈어요. 심도록.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밑에 옹벽이 쳐져 있고 그런데 청장님은 하라는 거고 실무진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밑에 그거 보상을 해준 도로 아납니까? 서울시 도로에다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옹벽친 거는 삼한기업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정도 두께만 파면 나무는 뿌리만 내려가면 살아요. 그쵸? 살 수 있어요. 주민들이 전부다 한결같은 얘기니 지금 복춘을 가꾼다 하면서 그 중심도로에 재벌기업 앞에 다른 집 건 좋은데 가장 주민들이 혐오감을 가지는 그 집을 옹호하는 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든 이빨 빠진 부분에 나무를 심어라 하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 보고를 받았는지 답을 해주시고 청장님께서도 심도록 주민들 앞에서 당부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가로수를 이빨 빠진 부분에 이걸 심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금년 예산에 넣어 가지고 내년 봄에는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직접 제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도로개설하는 과정에서 李炯述委員님께서 굉장히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말씀하셨던 이단도로가 되지 않고 지금 도로선이 바로잡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도쪽에 주택을 지으면서 옹벽에 기초 콘크리트가 보도 지하쪽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목을 식재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청장님께서도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을 식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식재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 밑의 콘크리트를 깨는 과정에서 혹시나 옹벽의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사업 추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 속에 보면 지금 가회동길을 가장 중심으로,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회동길을 다시 한번 단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도 좀더 넓히고 나무도 더 심고 그래서 정말 운치있는 길로, 지금 돈화문길을 걷고싶은 길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보다 더 운치있는 그런 길로 가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계획이 확정될 겁니다. 그래서 나무도 더 심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되면 어차피 소나무는 더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야를 검토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어차피 그 그림에 맞춰 가지고 심어줘야 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심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李炯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본 위원은 저희 지역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주로변이 상세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청취라고 해가지고 상세지역을 해제시켰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거기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해서 일반미관지구라고 의견청취를 한번 한 적이 있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丁炳煥委員 심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局長님께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면 사후처리 과정을 서면으로라도 통보를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반드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결과를 해당지역 위원님께는 꼭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잠깐만요. 丁炳煥委員님께 양해를 구하구요. 局長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금년 1월인가 2월에 건교부 서울시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람공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누구도 몰랐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당시 도시계획과장이신 鄭鎭皓課長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공람공고 재조정과 관련된 신문기사가 난 게 있어요. 이따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丁炳煥委員께서 얘기하신 내용도 기왕에 그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이나 주민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세

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그게 꼭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신문기사라도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그런 기사라면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든지 직접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丁炳煥委員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심의중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국장님이 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심의를 빨리 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이 불량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존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문제는 저희들 별 문제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서울시에서 각 국 것을 취합해서 일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사직동 261번지 환경개선지구 내에 미도로개설을 한 50여 m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도로개설은 언제쯤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지역이 지금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구로 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9월쯤이면 바로 저희들이 착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吳錦南委員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마무리까지는 어렵겠지만 일단 착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을 해놓은 것을 보면 사직터널에서 올라가는 길 이전 교통국장도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차량은 다닐 수 있지만 좌편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 매입한 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단을 좀 만들고 거기 휨스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네들이 빙판에 다니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에 옹벽을 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휨스를 좀 쳐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현장을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도로만 개설하지 말고 그것도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고 또 하나는 4m 도로를 냈는데 도로개설을 하는 소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의 양쪽에만 물받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구에 퍼시픽호텔 뒤를 한바퀴 회전하면서 일방통행로로 들어오면 20~30m 가량의 물받이를 도로 전체에 다 했습니다. 길이 좀 가파르니까 중간에서 전부 물이 빠지는데 지금 4m가 됐든 5m도로가 됐든 물받이를 양쪽 가에만 해놓으니까 물은 가운데 도로에서 전부 내려옵니다. 겨울에는 빙판이라 다닐 수가 없어요. 또 비가 오면 물이 전부 가운데로 내려오지 물받이는 가외로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스팔트를 약간 타원형으로 한다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직동 262번지 도로개설 때도 그 소장한테 얘기해서 제가 차량이 다니는, 바퀴가 달는 데만 하지 말고 중간에다가 물받이를 해라 해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해놓고 보니까 수리비가 중간 중간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물받이를 도로를 횡단해서 해놔야 가파른 곳에서는 되지 않겠는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같이 참여해서 참작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도로 낸 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도로를 낼 수 있는 곳은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겠습니다. 풍치지구 제3미관지구 말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쪽의 건축완화 지역으로 해서 일부 시에 상정되어 있는 게 있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거기에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심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국장님이 마련하셔서 끝나는 부분에 다시 한 번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丁炳煥委員님! 아까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福同委員 제가 좀

○委員長 安載弘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은 끝났습니다마는

(○吳錦南委員 議席에서 - 委員長님! 내가 하나만)

도시관리국에 대한

○吳錦南委員 건축과가 도시관리국 소관이죠? 필운동에 의회로 진정서가 들어온 것도 있고 저한테도 이렇게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마는 건축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필운동 24-1 건입니까?

○吳錦南委員 예.

○委員長 安載弘 委員님! 그거는 자료가 왔으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종로에 큰 엄청난 수해피해가 있고 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종로가 도시 형성되기는 610년 정도 되지요? 어떤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오래된 도시인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빗물받이 조금 전에 吳委員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빗물받이라고 합니까? 맨홀이라고

합니까? 폭이 50m 도로에 가에로 물받이가 있죠? 이러한 물받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간당 피해가 물이 60ml까지는 되는데 60ml 이상 왔을 때는 받아내지 못합니다. 현장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청소하는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 물받이에 계속 오물이 끼어 가지고 빠져나가지 않고 그 가운데도 청계천이 범람해서 물이 올라왔고 그 중에 하나가 물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시간당 60ml까지는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60ml 이상 쏟아질 때는 넘칩니다. 넘쳐 가지고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에 지금 물 피해가 수해피해가 없는 구고 복 받은 구였는데 금년에 우리 지역에도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본 가정 또 상가에서 600 점포가 물에 잠기고 쓰레기를 본 위원이 눈으로 본 것만도 우리 지역의 쓰레기 수거가 125톤을 실어냈습니다. 차량으로 실어낸 과정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수해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뜻은 가지고 계신가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金福同委員님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구 행정으로는 처음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물하고의 싸움은 가장 준설이고 물 빠지게 해주는 것이 크다고 하기보다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간당 60ml 강우량에 대해서 이제까지 오래된 도시부터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옳습니다. 거기에 오물이나 청소로 인해 협착물이 낀다고 해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도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무엇보다 준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지사 60ml까지라도 하는 것까지라도 준설을 빨리 해가지고 그리 빠져나가게 하고 60ml 이상으로 하려면 관이나 이러한 박스같은 걸로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사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후 조

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준설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빗물받이나 아까 吳委員님도 얘기하셨던 횡단빗물받이라든지 이런 준설문제를 제일 중점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가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종로5·6가의 관내에 대학로 혜화동, 명륜동에서 솟아나는 물이 큰 개천이 있습니다. 개천을 4m 사방으로 해서 박스를 '75년도에 박스공사를 해서 박스를 쳐왔는데 박스를 만든 이후로 지금까지 준설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서울시에서 어떤 일이, 양경숙의원이나 서울시에 막 호통을 쳤습니다. 박스를 만들어놓고 당신네들 한번도 치운 일이 없는데 되겠느냐? 역수가 돼서 비 피해가 많았었다. 종로5·6가 파출소 건너편에 보면 지하박스를 완전히 파 가지고 거기다 도저를 2대 집어넣었어요. 도저를 집어넣어 가지고 위에서부터 계속 모래나 자갈이 1m50cm 가량 깔려있는 것을 요즘 퍼내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생활하수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낮에는 못하고 저녁 10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아주 줄어들고 했을 때 도저를 땅에 넣고 끌어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뭐냐면 한가지 부탁 드리는 것은 종로5가에서 충신동 대학로에 이르기까지 박스에 준설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설을 하루속히 해야 됩니다. 4m 되어 있는 박스가 1m50이 차가지고 있으니까 물 올라오는 공간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m50에 물이 나가다보니까 물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동승동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래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막혀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委員長 安載弘 국장님! 金福同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토목과에 준설과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설과 관련된 모

든 작업은 우기가 오기 전에 작업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1년 내내 준설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우가 기습적인 폭우가 제한된 시간 내에 쏟아질 때는 소위 그것을 커버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역수가 돼서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도적으로 제가 여기를 와서 볼 때 지금 아까 도시관리국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로는 20m 이상은 시, 20m미만은 구 이렇게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하수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수는 그러면 광화문이든지 청계천이든지 큰 데에 하수박수가 10m, 15m, 25m 박스가 있을 경우에 도대체 누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될 거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金福同委員 국장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든 간에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빨리 처리했으면 지역주민에게 이렇게 피해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난 3년 동안 올해도 준설 예산으로 2억을 배정 받았는데 올봄에 그것이 벌써 다 소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향후에는 준설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좋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토목이라든가 이러한 분야는 예산을 조사해서 많이 올리세요.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종로구에 필요한 예산인데 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수구가 종로구에 오래된 도시에 노후 하수관이 너무 밀집되어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맨홀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침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완전히 옛날의 재래식 방식으로 10cm, 20cm가 벌어져 있어요. 이곳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주위에 침수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서는 다가오는 해에는 바로 하수도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을 모두가 해달라

는 곳에 해줘야 됩니다. 땅이 완전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수관 지나간 옆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파게 되면 땅이 썩어 가지고 있습니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종로구에 일다운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낱알이 조사해서 어느 동이 났든 간에 하수도 노후관은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載弘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는 없으니까 도시관리국장이나 과장들은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金福同委員 아니요, 국장님도 이 얘기는 듣고 가셔야 돼요. 이번에 수해복구비로 해서 인명피해가 3명이 났는데 2,000만원이 지출이 된 것이 있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金福同委員 어디 소관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자치행정과

○土木課長 鄭鎮皓 모든 재해복구비는 종로구 재해본부장인 청장님이시나 업무를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러면 강원도 등산가서 사망한 사람도 종로구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까? 종로구비로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土木課長 鄭鎮皓 우리 주민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국가에서 돈을 드렸다는 그런 표현으로

○金福同委員 전달만 했다는 거죠? 국비가 났든 구비가 났든 말이죠, 왜 외부에 가서 사망한 것을 종로구에서 하등에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를 더 간략하게 얘기하고 저만 말씀한다고 하니가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보면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어느 동네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골목마다 다 그려놓고 어느 동네는 몇 개 그리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형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동네는 골목마다 6m 도로마다 다 그려서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게 그려놓고 있으며 어느 동네는 40면으로 그려놓은 곳도 있고 20면을 그려놓은 곳도 있는데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는 이유가 뭘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기본적인 제 개념으로는 어떤 주차를 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발달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불이 나거나 이렇게 긴급재난이 올 때에 차들이 이왕 길을 주차를 한다고 하면 질서정연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에 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혼란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주차를 한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이러한 제도 속에서 좀 정렬있게 주차를 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어렵게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책(苦肉之策)인데 이왕지사 하는 김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국장님! 우리 종로구에 오셔서 종로 실정을 아직 잘 모르실 거고 답변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많이 했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약 250대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면 여기에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익도 되거나 불편이 많이 느껴집니다.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말 그대로인데 사실 우리 집같은 경우는 주민이 이용하는 일보다도 외부에서 온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1대에 4만원씩이면 250대면 1,000만원 상당이 종로구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장님 생각을 바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곳에는 모든 차량 문제라든가 쉼스라든가 아니면 교통에 관한 금액을 조금 동네에 할애할 수 있는 용

의는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산 배정문제는 여러 가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단속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덜커덕 앉아있다든지 다른 차들이 끼어있다든지 해서 시의 방침도 10월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합니다마는 11월 이후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고 거기서 나온 돈은 투자문제는 예산 배정문제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좋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아까 문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의 한계가 어느 선, 어느 선 기점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에게 진정으로 원단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체를 많이 망가진 심지어는 한사람이 20억이 손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억 이상 손해난 사람이 있는데 종로구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피해가 종로구에서 가장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가사제품이 망가졌다든가 가전제품이 망가졌다든가 수리해주고 우리가 보조한다는 차원으로 90만원씩 준 일이 있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金福同委員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공정하게 이 돈을 모자라면 나눠서 낱알이 그 분들에게 다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점검해 가지고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건설교통국장은 재해대책본부장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보상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관이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보상이라는 용어가 동원이 되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 시설물을 잘했는지 안했는지 간에 일단은 주민이 피해를 봤을 때는 이것은 관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보

상이라는 용어를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어가 수재의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위로금이라든지 명칭을 어떤 것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하튼간에 국비든 시비든지 구비든지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나온 것도 국비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 나온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택, 공장, 상가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은 없는데 주택 국이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이 돈을 국비에서 받아와 가지고 나눠준 것을 우리가 재해대책본부장으로 취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구에서 줄 수가 있으나, 없느냐 하는 문제는 변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福同委員 끝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金福同委員,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골목골목 마다 종로구에 다시금 이러한 수해피해가 없도록 준설작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감사합니다. 저도 준설 문제는 제1번 순위로 놓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국장님이 종로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상세한 보고를 받을 기회가 없으리라고 보고 참고로 해주시고 또 답은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로관내에 도로에 빗물받이 이번 7월 14일, 15일 비가 왔을 때 청계천 노면에도 비가 오면 바로 하수구로 물이 빠져나가면 도로에 침수되는 부분도 줄텐데 도로폭보다도 더 높이 빗물받이가 있는 조사를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李炯述委員 몇군데나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저희들이 오자마자 수해를 맞아 가지고 저희가 동에다가 이것을 좀 받아

라, 이왕지사 사람이라는 것은 지나간 일에 잘잘못은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또 대비를 해보자, 노력을 해보자 해서 각 동에서 이렇게 받았습니까. 각 동에서 우리가 또 혹시 개량을 할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해라. 옛날에는 동업무가 있었지만 이렇게 올라온 것이 48건입니다.

○李炯述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한 달에 여러 차례 청장님 모시고 티타임도 하고 국장회의도 하고 그러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공원녹지과는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빗물받이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삼청공원에 가보면 집을 새로 지었는데 바닥에 물 내려가는 하수구가 이것이 높아서 물이 안 들어가고 바닥에 물이 차면 바깥으로 넘어가고 일부 나머지가 들어가도록 새로 짓는 건물도 그렇거든. 이번 수해보상 해 줄 때 재해보상비에 재동, 안국동 전철역 옆에 이웃 건물에 지하에 물이 내려가 가지고 보상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면 현재 도로보다 빗물받이가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도로에 한 2~30cm 물이 고였을 때 그리 빠져나가도록 이런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빠른 시일 안에 그 부분을 수정해서 도로면보다도 빗물받이는 낮게 해주어야 물이 빠져나가지 빗물받이가 어떻게 도로보다 더 높게 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지나갈 때마다 고치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안됩니다. 국장님 여기 종로구청 건설교통국장 하는 동안에 이 부분을 필히 빨리 수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 장소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제가

○李炯述委員 안국전철역 뿐만 아니라 종로관내에 도로보다 빗물받이가 더 높게 되어 있는 곳은 도로보다 낮게 당연히 해주어야 될 일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두번째 종로관내에 골목골목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해가지고 많이 팝니다. 파고 나면 다시 되메우기 하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李炯述委員 아스콘공사를 할 때에 뒤에 공사를 상수도공사를 하면 상수도공사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아스콘 포장할 때에 굴곡이 생겨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도로에 물이 고여 가지고 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이 튀어서는 지나가는 구민들의 옷이 진흙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상수도공사를 하고 바로 며칠 후에 아스콘공사를 해가지고 원형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20일, 30일 가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다가 빠져 가지고 덜컹거리고 불편을 주는데 이런 부분도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도로굴착 허가 내줄 때 분명히 다짐받아 가지고 너희가 다시 이런 민원이 오면 앞으로 도로굴착 허가에 좀 제동을 걸어서, 그때에 제동 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로구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국장님 답을 받기 전에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청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알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시정할 것은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종로구 중앙고등학교 제일 꼭대기에 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빨래터가 있어요. 이번에 비가 올 때에 한 길 되는 아주 큰 관이 2개 묻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창덕궁관리소에서는 제대로 안해 가지고 비가 오니까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와가지고 하수구를 막아버렸어. 하수구로 떠내려와가지고 물이 2m가 넘는 지상으로 해서 그 동네에 주택지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온 주민들이 집 안에 물이 들어오니까 피해를 본 그것을 원서동 주민들은 이것을 인재라고 봅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고 재해가 아니고 인재로 일어난 일이다. 이 부분은 그 위에 관리하는 것은 종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종로구청이 다른 부처에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않도록 국장님이 문화재관리청에 하든지 안 그러면 비원관리사업소에 하든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큰 한 길 넘는 관이 2개나 들어와 가지고 비원경로당 밑에 와서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꺾여 가지고 비원 안으로

하수도가 뚫려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오는 관 2개가 비원 안으로 들어가는 관은 조그만 옛날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알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면 금년 중에 내년 우기 오기 전에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물이 모여 내려오면 아랫부분이 물이 뭉쳐지는 그곳은 밑으로 내려올 수록 관이 커지면 커져야지 어떻게 위에 관보다도 절반도 안되는 관이 묻혀 있느냐, 묻혀 있다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통수단면을 따져볼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도시관리국장님도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시청에 며칠 전에 북촌마을 정비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지금 비원 창덕궁 옆에 붙어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고민하고 매수를 하느냐, 강제구입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그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800mm관 2개가 내려오다가 작은 관이 있는데 작은 관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통수단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아까 같이 협착물 통나무가 와서 물이 안 빠져나가서 수해가 난거지 통수단면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어떻게 위에서 관이 내려오는데 물이 직결되는 부분이 관이 똑같은 관이 내려오면 모르는데 내려와 가지고 관이 절반으로 준다면 이것은 일반주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비원 그 위에 내려오는 물, 원서동 3,000명 주민들이 쓰는 물 그 물이 내려와 가지고 한데 합쳐서 마지막에 꺾이는 부분이 작은 관이 묻혀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 국장님!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서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관심있게 통수단면도 해보시고 이 부분은 두번 다시 물이 넘쳐 가지고 빠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수해를 입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종로구청의 책임이 크리라고 보고 이 부분

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난번에도 문화재관리청에 일단 전화도 했고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얘기도 했고 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李炯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도 3만원, 전일은 4만 원을 받고 있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네.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다가 무단주차하는 걸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견인업체가 어디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와룡상사죠?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럼 와룡상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 견인해가는 계약을 몇년으로 체결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제가 그 업무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交通行政課長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몇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구요 업체가 지정이 돼서 승인해 가지고 와룡이 단독업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아니 약정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제가 그것은 검토를 못 해서

○丁炳煥委員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무단주차될 때에는 단속요원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해야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고급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는 견인을 못 해갑니까?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고급차 경우도 당연히 견

인을 해야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일단 견인하려면 그 문을 끌러 가지고 기아를 풀어야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고급차의 경우는 열쇠를 풀 수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고급차라고 그러면 기아를 안 풀어도 견인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8월 2일 12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무단주차를 해서 제가 우리 구청에다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정일영인가 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그럼 그 당시 8월 2일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확인해보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몇 번 전화를 했는데 고급차라 견인을 못 한다고 해서 민원으로 제가 가봤더니 트라이제 한 2년 된 차예요. 그걸 무려 6시간 이상 무단주차가 됐는데도 고급차라 견인을 못 한다고 해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급차 견인을 그 동안에는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로 끌고 갔었는데 전체를 실어 가지고 견인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와룡과 협조해서 지시가 있었으니까요

○丁炳煥委員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에서 좋은 차 갖다 놓으면 견인을 못 하는데요?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요 8월 2일 12시에서 오후 7시 20분까지 근무한 정일영 공익요원하고 아마 최 누구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알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이거 민원이 막대하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급차는 견인을 못 해가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말쟁이 있습니다. 그 점을 課長님께서 유념해서

서 사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局長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7월 12일입니다.

○丁炳煥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은 그 당시에 소관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까만 어느 지역에 집단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승인해야 하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100%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지 못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그 굴착공사에 가령 100% 몇 집이 승인을 못 하고 공급을 다 하고 굴착한 데를 포장공사를 다 했는데 그 굴착기간이 3년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데 그 단서조항인가 배관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지면 굴착을 바로 할 수가 있죠? 아마 10m 이내에 들어가면 바로 굴착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단서조항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있는데

○土木課長 鄭鎮皓 丁炳煥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굴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3년에 한해 재굴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주거환경과 직접 관련된 아주 필수불가결한 10m 미만의 경우에는 제한규정을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현장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탁상에 앉아서 이걸 3년이 안됐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해줄 수 없다. 극동도시가스에서 재굴착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공문을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배관으로부터 1.5m도 안 되는데 앉아서 이걸 못 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문을 가지고 따지니까 나중에

굴착허가를 내주는데 앞으로 우리 토목과장은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서 모든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鄭鎮皓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康亨宇局長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 토목과장님도 토목과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들으시고 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사항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이면도로 주차계획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관내에서요. 그런데 어제 저희 동네에 와서 주차구획선을 긋길래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5m 이상의 주택이 이면도로는 거주자 주차를 그늘 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저희 동네 이면도로에 5m 80~90되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을 제가 그어달라고 해도 그어주질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책임을 지겠느냐? 아니면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 오게 되면 책임을 질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이름을 적어왔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꼭 주민들이 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서류상의 보고하고는 다르단 얘기죠. 5m 이상이면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 분은 안 해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1개는 어제 그었습니다. 다른 거는 못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주차구획선 긋는 행정과 과장님이나 긋는 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는 전문위원들이 몇 주전에 여기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의원님들을 나오시라고 해서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 대다수가 안 나오셨습니다만 저는 나와서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그 도면을 보고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곳을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 동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렸어도

그어주지 않았다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저는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여기 계십니다만 그전에 저희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1주일에 한번씩 통장님들하고 순방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이기조 동장님께서 그때 당시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도로가 파손된 데 기타 모든 것을 의견청취도 듣고 해서 즉시 고칠 것은 공공근로를 통해서 고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종로구로 서류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즉시즉시 되다시피 하고 또 구에 올리면 되는데 나머지 물받이를 해야 한다든지 기타 동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올려도 지금까지 해온 것이 없어요. 아마 局長님, 課長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고 가서서 사직동에서 올라온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물받이 해야 할 것, 도로 파손된 데 해당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고 지난번 7월 15일날 폭우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115세대 정도가 침수되고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여 세대는 거의가 다 지하실이 물에 찼습니다. 물론 어느 집이건 다 마찬가지겠 습니다만 이런 지역에 신속하게 퍼낼 수 있는 양수기가 각동에 1대씩 밖에 없어요. 이것도 보급률을 좀 높여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해야겠습니다만 동에서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사로에 유사를 지금 도로를 구멍을 뚫고 퍼내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課長님!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도 허가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경북구역에 지하철을 내면서 거기가 막혀서 물이 넘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거기 추사로에 물이 차질 않았는데 그 지하철을 내면서 부터 수문을 다른 데로 들렀기 때문에 물이 차질 않나 싶어서 현장을 찾아가 방문해보려고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줘서 못 들어갔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과장님하고 거길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멍을 내서 모래를 꺼내고 있는데 경북구역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위에만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오고 또 그 공사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뜻을 써붙이고 구에서 한다든지, 시에서 한다든지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상수도 계량기가 전부 문 밖으로 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 자리를 20일이 아니라 15~30일이 돼도 복구를 안한 데가 있어요. 그거 전부 복구비를 받으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네, 받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사직동사무소에서 환경연합이 있는 쪽까지도 그 상수도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달 이상이 됐는데도 복구를 안 해요. 이것도 복구를 좀 빨리 해주셔야겠습니다. 간접비를 받으셨으면 빨리 해주셔야지요? 주민한테 피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들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빗물받이 및 취약지역 준설작업은 8월 말까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8월 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력으로 8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직동 일로 제가 공문을 올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이대로 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사항은 局長님께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 때 상세하게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을 남겨놓고 제 의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감사합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고 양수기는 저희들이 사직동 동사무소에는 7대가 나가있고 이번에 92대를 더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직동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3대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침수된 지하층에 대해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3대가 내려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사직동에 구입된 거 3대 말고 4대가 더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7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제가 하루종일 물을 푸는 데를 다 냈는데 그렇게 없던데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우리 구청에 106대가 있습니다. 106대는 동사무소에 각 배분을 하고 전체 합계가 106대이고 이번에 추가로 92대를 또 샀습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동되는 것이 1대이고 가동이 안 되는 것이 1대이고 대관령 이흥기사장님한테 1대 받고 종로2가에서 1대 받고 소방소에서 1대받고 이렇게 해서 4대로 해서 물을 뽑아냈는데 하여튼 서류상에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빗물받이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동에서 올라온 것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 8월 말이라는 것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동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암동 서쪽지역을 오늘부터 지금 진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초까지는 특별한 어려운 지역을 빼놓고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직동 준설문제는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준설문제는 동에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지 지금 우리가 기금이 있는데요 그 기금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쳐져서 못 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세요.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局長님하고 課長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동기능이 전부 구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규모사업도 없어지고 주차관리나 과속방지턱이나 무허가건축물이나 이런 게 전부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동에서 하던 게 구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구청에 너무 일이 많다고. 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요청을 해도 구청은 인원이 딸려서 나오지를 못 해

요. 나 같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한다구요. 그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기능을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무슨 복지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지옥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동기능이 도로 환원되기 전까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에 좀더 철저하시고 민원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즉각즉각 대처하는 이런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주시시오.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사항은 못 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월요일날 현장답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바쁘신데 또 현장답사까지 곤란 하니까 이 자리에서 여쭙 볼테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검정 제1교에서 다리가 한 44개가 있어요. 그런데 세검정 다리하고 신영동 다리 때문에 연중행사로 홍제동, 신영동 로터리가 마비되고 문화재보호니 정자니 이거 다 무너져버려요. 이걸 연중행사입니다. 도로파괴가 안 되나 축대가 안 무너지나 굉장한데 그런데 4년 전에 서울시에다 얘기해 가지고 세검정 1교가 재작년에 안전진단 나와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다리를 다시 놓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의 걸 헐어 가지고 다시 놓는 줄 알았더니 위의 도로를 없애더니 주민한테 설명도 없고 지금 하천 하상 파내기 있죠? 그거 굴곡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이 포크레인 들어가고 콤팩트사 들어가고 해서 하상작업을 해가지고 흙을 퍼내고 있어요. 옛그제도 통장회의도 있었고 단체장 회의도 들어갔지만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다리를 다시 놓을 거냐? 아니냐? 개천 그것만 파내고 그만둘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는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신영동로터리 다시 놓는 거는 지금 퇴임하신 이종철과장님이 윤주임님인가 하는 주사를 데리고 나와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다 작성해왔을 겁니다. 그걸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나 후년도에 다시 놓기로 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가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검정 제1교 그게 어떻게 공사를 하는건지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모르시면 우리 委員長하고 월요일날 현장을 가야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세검1교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정도의 수준밖에 저도 모릅니다. 이견 아마 사업소에서 하는 건데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소에다가 공사개요라든지 공사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서울시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네.

○玄壽漢委員 상급기관이라서 그런지 거긴 왜 그래요? 왜냐하면 동네지역의 대표가 있고 구의원이 있고 동장이 있고 또 우리 종로구에서 일을 하면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 연락을 해줘야 할 것 아니야? 어떻게 일을 한다고. 플랜카드 걸어놓은 것 보니까 2002년 12월 말까지야. 공사기간이. 개보수로 되어 있어요. 설명도 없고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걸?

○委員長 安載弘 委員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局長 답변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세검1교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委員長 安載弘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삼각형 로터리 있는 데 아십니까? 올라가면서 그 정자밑에 교량 세군데 있는 거 거지요.

○委員長 安載弘 다리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셨어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정도만 알고 있고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건 문제가 있어요. 玄壽漢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도로관리계 직원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벌써 5~6일 됐는데 그럼 그 직원이 담당과장이나 국장에게 보고를 안 했겠어요? 왜냐하면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이 되겠지만 크로라드릴을 이용해서 바닥을 까내고 있던 말이죠. 그러면 그 진동이나

소음이 인근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고 컨테이너 사무실 3개가 인도를 이용하고 있고 인도에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시행청은 북부도로관리사업소일 겁니다. 그걸 담당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대표자도 있고 그 지역 주민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공사기간에 따른 불편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유발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모르셨다면 문제가 되지요. 자세히 좀 아서 가지고 조사를 해서 9월 4일날 우리가 거길 갈테니까 월요일날 11시인데 그 공사가 얼마나, 어떤 종류의 어떤 공사기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공사가 준비되는지 설명을 줄 수 있도록 局長님께서 준비를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세검1교가 북부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 이랑 업무연락을 취해서 9월 3일

○委員長 安載弘 11시요.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종로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시 관할 사업이라도 종로구에서 일어나는 거고 또 그 하천이 홍제천 하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관리주체는 종로구란 말입니다. 그러한 복합성을 갖고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게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2개 도로 이거 때문에 수십년 동안 그 검문소 일대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 도로도 서울시 거고 다리도 서울시 거니까 거기서 해주기만을 기다렸는데 그게 안 되요. 45년 전부터 서울시에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런 구청에 통보도 없이 설명도 없이 무슨 플래카드만 두 군데 걸어놨더라구.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아까 컨테이너박스 현장 사무실이 있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玄壽漢委員 우리는 모르는데?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컨테이너사무실을 인도

에다 놓으려면 적어도 주택이나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놨다는 거죠.

○委員長 安載弘 委員님! 질의 더 안 하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까 金福同委員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수해복구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委員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 바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설치현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설치근거가 나와있는데 설치근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 그리고 구청장 방침 925호 지침에 의거 추진계획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치근거는 제가 주차장법에 의한 설치근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법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해도 좋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주차장법에 거주자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委員長 安載弘 좋습니다. 간략하게 하자구요. 그러면 모든 제도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제도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있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는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상위법의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떤 피해를 주냐 하면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주고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했을 경우에 끌려가야 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 제도가 과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주차장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주차장법 몇조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조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委員長 安載弘 주차장법에 어떤 법조문도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를 실시해도 좋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는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고 제8조제2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제10조제1항3호에는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중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규칙에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거예요. 이게 근거인데 중요한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이 제도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실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실시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그 자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어떤 근거도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局長님 답변해 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법령근거를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委員長 安載弘 확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시한다고 수역을 들여 가지고 용역하고서 실시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차 모르시면서 어떻게 실시합니까? 9월 1일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 불만이 그렇습니다. 주차를 잘못하면 끌려가요. 6만원을 내야 됩니다. 또 주차 잘못하면 4만원을 내야 됩니다. 4만원인가요? 3만원인가요? 그리고 월정사용료를 4만원씩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게 자동차세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간 내는 자동차세의 반도 안됩니다. 자동차와 관련

된 무지무지 막지한 세금을 부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2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확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 제도가 실시될 때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업무현황에 설치근거, 법령, 조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하는 기본적인 근거에는 이러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교통행정과장이 조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 설치지역에는 주차장법 제6조에 보면 주차장설비 기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주차장의 주차구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4조에 노상주차장의 소요기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 및 제5조의 2항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시행되는 내용에는 전용주차구획이라는 말이 없어요. 전용주차구획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배타적인 권리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하는 가장 큰 거는 구획선이 그어져있는 주민을 위한 배타적인 권리라고요. 그렇죠? 그 권리를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 입장에서 볼 때.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예.

○委員長 安載弘 그러면 전용구획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쓸 수 있는 공간 즉 주차장시행규칙 6의2를 보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그 다음에 하역주차공간 할 적에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타적인 권리가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전용주차구획선의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

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기준이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배타적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설치하는 법적인 논란이니까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安載弘 財務建設委員長님 말씀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다시 답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安載弘 대개 보면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리고 제가 서면답변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전용주차구획선이라고 관련된 그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기본적인 이유, 왜 합니까? 여러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왜 해요? 주민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잘못하면 4만원씩 내야죠. 월 4만원씩 내야죠. 잘못하면 딱지 떼야죠. 잘못해서 끌려가면 또 다른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게 과연 주민을 위한 제도냐 이거죠. 과연 주민을 위한 물론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있겠죠. 합당한 이유는 있겠죠.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만 못하다 이거죠.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당연하죠.

○委員長 安載弘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이 감정가와 소위 감정가와 공시지가 사이에서 고뇌를 해야 됩니다.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공영주차장 하나를 만들고 싶어도 공시지가를 훨씬 상회해야 되면 공영주차장 못 만들어요. 이런 걸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령적인 근거를 대주시고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좀 한 달 정도 유예를 하시고 지역별로 거의 사용자가 선정이 된 걸로 아는데 한 달 정도 더 유예를 하셨다가 하다 못해 주민들

이 조금 여유를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차를 어디다 주차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게 한 다음에 시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때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평창동에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671면인데 지정 지금 동에서 받은 182면이 지정이고 미지정이 489면입니다. 어떤 면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지정을 받아 가지고 돈을 내는 사람은 뛰고 안내는 장소에 누가 와서 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할거나 이런 면을 볼 때 사실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봄에서부터 끌려왔고 지금 8월말로 해가지고 9월 1일부터 평창동은 시행하도록 지금 잡혀있고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지정도 받고 돈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유예를 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그 시행착오를 조정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시행을 한다는 것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획을 사용허가를 받은 허가라고 할까, 받은 사람은 상관없이 있는데 지정받은 사람은 상관없이 있는데 지정받지 못해서 주차구획선에다가 주차를 했다가 신고에 의해서 그 차가 끌려간다면 끊임없이 민원이 시작되거든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당연히 민원이 날 수밖에 없고 그 지정 안된 사람이 그 구획에 논다는 그 스스로가 사회에서 정한 질서를 자기가 스스로 먼저 그 선을 넘어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니깐 그렇게 생각합니다.

(○玄壽漢委員 議席에서 - 위원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은 그어놓은 것이 한 동에 7·80면, 100면이잖아요. 거기에 반도 돈을 내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2:1, 3:1 경쟁이 붙었다고. 그런데 우리 구청 쪽에서 관리를 안해주니까 돈을 전부 안내고 이면에 전부 갖다 대고 뭐 하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만 억울

하니까 왜 관리를 안 해주냐, 돈을 안내 가지고 만 데다 대려고. 그러면 뒷골목이 엉망이 되어 버리는데 한 달 유예가 아니라 앞당겨서 실시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봐요. 지금 뒷골목에 저녁에 가면 엉망이에요. 평창동은 도로가 넓으니까 좋지만 우리 부암동 같은 데 말도 마세요. 아무튼)

○委員長 安載弘 전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安載弘 財務建設委員長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비점이나 법령의 근거 등은 제가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오늘 명륜1가 공영주차장 준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시간은 충분한데 왜, 빨리 가시려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지는 않고

○委員長 安載弘 5시에 시작인데요 뭐. 아무튼 오늘 회의에서 지적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모든 내용들 즉 하수구의 준설, 도로 빗물받이가 도로보다 높은 경우의 조정, 이면도로의 빗물받이 추가확충 그 다음에 긴급재난시 관리체계의 문제점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사의 기간이나 시공회사를 명시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공사의 품질 향상 및 공사감독관의 확인 이러한 문제점, 하수관로가 상단에는 크고 하단에는 작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강국장님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의 기반시설 아니겠습니까? 비가 얼마든지 온다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면 물난리를 겪을 일은 적을 것입니다. 거의 상습적으로 수해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셔서 가지고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 아까 金福同委

員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공사를 시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9월 3일 월요일날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수해복구 지역 및 피해 현장방문이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가능하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6分 散會)

○出席委員 8人

安載弘 吳弼根 吳錦南 玄壽漢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金福同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財務局長 董連浩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財務課長 趙秀完
稅務1課長 趙朝翼
稅務2課長 徐明一
地籍課長 徐燦奎
住宅課長 宣圭景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建築課長 李漢九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土木課長 鄭鎮皓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